

제229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62호
----------	---------

2019.10.4.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 9. 19.
- 나. 회부일자 : 2019. 9. 23.
- 다. 상정일자 : 2019. 10. 1.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김옥희 행정국장

### 나. 제정이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운영 및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시행규칙(안 제8조)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2019. 8. 14. ~ 9. 3.)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의안번호 제15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1)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을 광진구에 소재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과 달리 구분하고 있음.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2004년 청소년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대상과 지역을 달리 하며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중임. 지난 2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2019.7.17. “모두를 위한 스포츠”원칙을 실현하고 모든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권고한 바 있음. 주요내용은 1) 스포츠클럽 제도화 권고(등록제 도입, 클럽예산 정부 지원),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수양성, 3) 스포츠클럽 법제화( ‘스포츠클럽 육성법’ 및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제정), 4)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공공 체육시설 이용 관리체계 확립 등)임.
- 또한 국회에서도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하여 “스포츠클럽육성법안”이 소관위에 접수되었음. 이러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초에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내년부터 3년간 총 9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는 매년 1억원의 구비를 지원할 예정임.

※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수: 89개 (2019.6월 기준)

서울	전라북도	대전	광주
구로, 마포, 영등포, 광진(준비중)	고창생물권스포츠클럽 등 11개	대덕스포츠클럽 등 2개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등 8개
인천	세종	전라남도	울산
가천스포츠클럽 등 5개	세종스포츠클럽 (준비중)	강진군스포츠클럽 등 12개	남구, 동구(준비중)
부산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동래스포츠클럽 등 9개	보은, 제천, 충주	강릉, 영월, 춘천	거제, 거창, 사천, 진주, 함안, 함양, 합천(준비중)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구
시흥스포츠클럽 등 7개	부여, 천안	상주, 안동, 영일만, 영주, 의성, 포항	금호스포츠클럽 등 5개
제주 2개			

※ 정부 주관 스포츠클럽 사업 개요

구분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역동호인클럽	지역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종합형) 스포츠클럽
연도	2004~2007	2004~2005	2006~2010	2007~현재	2011~2014	2013~현재
개념	청소년으로 구성된 방과 후 활동	동호인클럽과 유사한 사업	종목, 연령, 운동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스포츠 조직	학교 내 체육활동을 포괄하는 학생 스포츠 동아리	생활체육 동호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공체육시설 중심의 스포츠클럽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 다종목, 다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주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문화관광부	교육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상	청소년	성인	성인	청소년	전 계층	전 계층
지역	일부지역 (6개 도시)	일부지역 (4개)	전국 (총 60개소)	전국	전국 (총 92개소)	전국 (현 52개소)
내용	청소년 운동경험 확대 및 훈련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동호인클럽 육성 지원 및 선진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 구축	기존동호회 지역리그를 통한 클럽 활성화 유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2종목 이상의 다연령, 다계층 프로그램 운영	4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종합적으로 지원
예산	정부 기금 +지방비	마사회 보조금	정부 기금 +지방비	특별교부금+지방비 +기타(체육회, 학교, 기부금)	정부 기금+지방비 +자체예산(회비, 기부금)	정부 기금+지방비 +자체예산(회비, 기부금)

-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은 물론 스포츠클럽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규정임.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 및 정산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점검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5개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였음.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진흥조례<sup>2)</sup>,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의 개별 조례의 지원 규정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사례도 있음.

현재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 2) <성북구 사례>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육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구는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입안하는 사항으로, 법률 위임 범위내에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를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